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원채용 지침

GNSAD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원채용 지침

제정 2018. 12. 11.

개정 2020. 02. 03.

개정 2020. 07. 09.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 처무규정 제3조에 따른 사무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회 처무규정 별표2에서 명시한 직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채용기준)** 회장은 직원의 신규 채용 시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과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3.>

**제4조 (차별금지)** 회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채용계획 수립

**제5조 (채용계획의 수립)**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원요인과 인력소요 판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원채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인원
2. 채용분야 및 직급
3. 채용방법
4. 응시자격 기준
5. 공고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 ① 신규 채용자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삭제 2020. 2. 3.>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3.>
- ③ <삭제 2020. 2. 3.> 신규채용인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이상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20. 2. 3.>

## 제3장 채용시험의 공고

**제7조 (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접수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
  - 2.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장소
  - 3. 구비서류
  - 4.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②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 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3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 ③ 채용 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8조 (공고매체)** 공개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본회 및 경상남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할 수 있다.

## 제4장 시험위원 임면

**제9조 (시험위원의 임명)** 직원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전형,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서류전형은 3명으로 하고, 면접시험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형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3.>

- 1.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10조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

채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인사를 전체 위원 중 2분의 1이상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회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스승과 제자, 각 가맹단체소속 장과 직원, 동일 직장 근무자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0. 2. 3.>

## 제5장 시험 실시

**제12조 (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심사 방법으로 다음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필기시험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별표2, 별표3에 의거 정해진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 ③ 면접심사는 별표5에 의거 정해진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한다.
- ④ 체육단체 업무 특성상 체육관련 대학 및 선수출신을 우대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13조 (채용시험 가산점)** ① 가점대상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각 전형별로 가산점수를 별표4에 따라 그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20. 7. 9.>

- ② 별표4 각 호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20. 7. 9.>

**제14조 (심사채점 및 심사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① 심사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표6에 의거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채용시험의 협의 등)** 사무처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직위 또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선발예정인원수 등을 미리 회장 결재를 득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후에도 그 채용시험 결과 등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장 합격자 결정 및 채용

제16조 (합격기준)① 서류전형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서류 심사기준표(사무직렬)” 은 기준표에 의거 50점 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단, “별표3 서류 심사기준표(운전직렬)” 은 기준표에 의거 상위 점수순으로 5배수를 선발한다.<개정 2020. 2. 3.>
2.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상위 5배수를 선발한다.
3. 서류전형 결과 5배수 내 동점자는 “관련분야 경력” 의 배점이 높은자가 우선 선발한다.<개정 2020. 2. 3.>

② 면접시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5 직원채용 면접시험 기준표에 의거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
2.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한다.
3. 서류전형 점수 및 순위는 면접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7조 (채용과정 공개) 회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 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채용자료 보관) 인사·감사 부서는 채용서류를 동시 보관하고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제19조 (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응시원서(장애인체육회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면허, 자격증명서, 자원봉사 실적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 1부
8. 기본증명서 1부
9. 서약서(장애인체육회소정양식) 1부
10. 신원진술서 1부
11.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1부

단, 8~11호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며, 필요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 병역 및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해임시킬 수 있다.

**제20조 (신체검사)** ① 면접시험 합격자는 종합병원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용을 연기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者)
2. 본회 처무규정 제9조(자격규제)에 해당하는 자(者)
3. 거주지제한: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자(者)
4.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공고일기준), 만 60세 이내인 자(者)

**제22조 (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항에 해당 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은 자
3.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4. 본회 처무규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5. 채용결정 통보 후 본인 스스로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3조 (수당지급)** 회장은 공개채용시험 실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위원
2. 면접시험위원 등

**제24조 (채용비리 임직원 직무정지 및 명단공개)**①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채용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회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권한을 내부규정에 둘 수 있다.

③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제25조 (채용비위 관계자 합격 취소)**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① 제23조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자가 취소 될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응시자를 파악하여 구제해야 한다.

②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1.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가. 최종 면접 시험 피해는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나. 필기 시험 피해는 해당 피해자 면접 응시 기회 부여

다. 서류 전형 피해는 해당 피해자 필기 응시 기회 부여, 단 필기시험이 없을 시 면접 응시 기회 부여

2. 피해자 특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을 하여 채용 실시한다.

가. 최종 면접 시험 피해는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나. 필기 시험 피해는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다. 서류 전형 피해는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3.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할 수 있으며, 단,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 할 수 있다.

## **부 칙(2018. 12. 11.)**

**제1조 (시행일)**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2. 3.)**

**제1조 (시행일)**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7. 9.)**

**제1조 (시행일)**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구분	자 격 기 준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으로 재직한자 또는 5급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li> <li>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li> <li>3. 대학의 해당 전문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li> <li>4.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li> <li>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재직한자 또는 6급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li> <li>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li> <li>3. 대학의 해당 전문분야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의 해당 전문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li> <li>4.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li> <li>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7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li> <li>2. 체육분야 석사학위 소지자</li> <li>3. 체육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5.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6. 5년 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7.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8급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li> <li>2.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li> <li>3. 학사학위취득 후 2년 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4.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5. 3년 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6.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8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li> <li>2. 3년 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9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li> <li>2. 2년 이상 체육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 별표 2 】 서류 심사기준표(사무직렬)<개정 2020. 7. 9.>

- 응시번호 :
- 성 명 :

항목	내용	기준		배점	총점	비고
<b>계</b>				<b>100점</b>		
관련분야 자격증 (40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2개이상	10점	10점		
		1개	5점			
	사회복지사 / 국가발행	1급	10점	10점		
		2급	5점			
	국가발행 - 장애인체육, 체육관련 자격증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	3개이상	15점	15점		
		2개	10점			
		1개	5점			
	법인발행(1-2급) - 장애인체육, 체육관련 자격증	2개이상	5점	5점		
1개		3점				
관련분야 경력 (20점)	3년 이상(공공기관, 장애인 및 체육관련 단체 등)	20점		20점		
	3년 미만(공공기관, 장애인 및 체육관련 단체 등)	17점				
	2년 이상(일반회사 및 법인단체 등)	14점				
	2년 미만(일반회사 및 법인단체 등)	11점				
	1년 미만	8점				
직무수행 계획서 (20점)	업무수행계획,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을 논리적으로 기술 하였는가?	20점		20점		
최종학력 (10점)	4년제 대학 졸업(체육관련 학과)	10점		10점		
	4년제 대학 졸업(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인정)	8점				
	2년제 대학 졸업(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인정)	6점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인정)	4점				
기 타 (10점)	자원봉사 (국가인증기관: VMS, 1365, 두볼 등)	200시간이상	10점	10점		
		150시간이상	8점			
		100시간이상	6점			
		50시간이상	4점			

※ 장애인체육, 장애인관련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운영비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  
 ※ 모든 경력은 4대보험 가입에 한해 경력 인정

20 . . .

심사위원 : ○ ○ ○ (서명)

【 별표 3 】 서류 심사기준표(운전직렬)<개정 2020. 2. 3.>

- 응시번호:
- 성 명:

항 목	내 용	기 준		배점	총점	비고
계				100점		
자격증 (35점)	컴퓨터 및 전산 관련 자격증(국가발행)	2개 이상	10점	10점		
		1개	5점			
	사회복지사	1급	10점	10점		
		2급	5점			
	자동차 정비 관련(국가발행)	기사	15점	15점		
		산업기사	10점			
기능사		5점				
운전분야 종사 경 력 (30점)	공공기관 및 체육 관련 기관, 단체	5년 이상	15점	15점		
		3년 이상	10점			
		1년 이상	5점			
	일반회사	5년 이상	15점	15점		
		3년 이상	10점			
		1년 이상	5점			
무사고 이력 (15점)	운전경력증명서 사고 최근 이력 (경찰서 발행)	10년 이상	15점	15점		
		5년 이상	10점			
		3년 이상	5점			
직무수행 계 획 서 (10점)	업무수행계획,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을 논리적으로 기술 하였는가?	10점		10점		
기타 (10점)	자원봉사 (국가인증기관: VMS, 1365, 두불 등)	200시간이상	10점	10점		
		150시간이상	8점			
		100시간이상	6점			
		50시간이상	4점			

※ 공공기관 및 체육관련기관, 단체: 4대 보험가입, 주40시간 이상 근무자  
 사고이력: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한 11대 중과실 사고

20 . . .

심사위원 : ○ ○ ○ (서명)

【 별표 4 】 채용전형 가산점<신설 2020. 7. 9.>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 고 (증빙)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기타 법령에서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10%	장애인 증명서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

【 별표 5 】 면접 심사기준표<개정 2020. 7. 9.>

○ 응시번호 :

○ 성 명 :

NO	구분	질문 및 평가	배점	평정기준	총점	비고	
계			100점				
1	용모 태도	- 복장의 단정함, 바른자세, 말하는 태도	20점	상	16~20		
				중	10~15		
				하	0~9		
2	신뢰성	-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관한 답변	20점	상	16~20		
				중	10~15		
				하	0~9		
3	직무수행 및 직업관	- 직업에 대한 가치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직장인으로서의 윤리관과 도덕성	20점	상	16~20		
				중	10~15		
				하	0~9		
4	장애 인식도	- 장애인복지 및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장애인체육에 대한 견해 - 장애인체육에 관한 상식	20점	상	16~20		
				중	10~15		
				하	0~9		
5	논리적 사고 능력	- 발표논리력과 논리의 일관성 - 시사 및 상식 등 사회현안에 대한 시각	20점	상	16~20		
				중	10~15		
				하	0~9		

20 . . .

면접위원 : (서명)

#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신규직원 채용 심사위원으로서

1. 공정하게 심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며
2. 시험과정에서 취득한 시험에 관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제자 등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시험을 기피할 것이며,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